

[디자인분쟁 - 5] 동업 과정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권 등록이전 청구소송: 수원  
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63162 판결



동업자와 공동 개발한 제품 디자인 권리를 동업자 일방의 단독 등록하였으나, 동업 관계가 파탄으로 종료된 후 디자인 단독 창작을 주장하면서 디자인권 등록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단독창작이 아닌 공동창작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공유지분의 등록이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체결된 계약은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조합법리가 적용되므로 공동사업 조합을 청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특정 디자인권의 지분이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 1. 동업계약의 요지 및 디자인 등록경위

원고와 피고회사는 냉장고 식품보관용기 제품을 개발한 후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회사가 위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위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들이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 **2. 창작자의 디자인권 등록이전 주장**

위 공동사업 약정이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 약정유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계약' 역시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3. 판결요지**

법원은 원고가 유일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공동 창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 창작자의 지분이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으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  
로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변리사22년/변호사 14년, 심판소송, 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분쟁 One-Stop 대응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